

학원 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031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0년 10월 16일
4.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II. 제안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학원법」 제21조제3항
 - 추진 필요성: 학원·교습소 관련 법인에 위탁하여 연수의 일관성 및 능률성을 증대시키고, 연수 실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음

3.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교육청에서 수립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전반(교재 제작, 장소 대관, 연수 안내 등)

4. 민간위탁 기간: 2021. 1. 1. ~ 2021. 12. 31.

- 연수결과(성과)에 따라 매년 재계약 여부 결정

5. 수탁자 선정방식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사)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
- 교습자 연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습소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을 지정·고시

6. 예산 규모: 금134,750,000원(금일억삼천사백칠십오만원)

-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예산: 금87,580,000원(금팔천칠백오십팔만원)
- 교습자 연수예산: 금47,170,000원(금사천칠백일십칠만원)

IV. 참고사항: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
2. 관계 법령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031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및 사업이해도가 높은 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추진 개요

- 동 동의안의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연수”는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원 관계 법령에 기반한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교육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사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학원 관련 법령, 공교육 정상화 정책, 고액 사교육 조장 행위 방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학원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 방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연수를 직접 운영함에 있어 연수 인력의 부족,

학원·교습소의 운영이나 강사의 관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수 운영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민간위탁 등의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21조제3항에¹⁾ 따르면 교육감은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²⁾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³⁾ 따르면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1) 「학원법」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2)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관 사무 중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 동의안의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 사무”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 운영, 강사 관리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대상사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는 교육청 업무 소관의 학원 관련 법령, 지도·감독,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아동학대, 개인정보, 안전관리,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무, 강사 관리 등 학원 및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1]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 주요 내용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관련 법령 안내 ○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 사례 ○ 성범죄·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 ○ 안전관리 및 비상대피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안전 및 대피유도훈련 관련 내용 - 대피요령,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등 ○ 개인정보 보호 ○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 ○ 안전관리 및 비상대피 관련 교육 ○ 개인정보 보호 ○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 ○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 ○ (외국인강사) 한국 문화 이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또한 서울 지역에는 25,056개의 학원 및 교습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강사 등 연수대상자가 연간 116,70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연수를 운영하기에는 연수 운영 인력 부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학원 민원행정 업무 공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연수 대상 및 인원

(단위: 개, 명)

학원 및 교습소 수			연수 대상자			
학원	교습소	계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강사	계
14,828	10,228	25,056	14,957	10,301	91,379	116,637

- 이런 점에서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학원·교습소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불참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전체 적발 건수의 59.1%(11,343건)에 달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대상자가 연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표3] 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 현황

연도	점검 학원(교습소) 수	적발 건수	
		전체	설립·운영자연수 불참
2017	19,366	5,542	2,756 (49.7%)
2018	21,431	5,542	3,228 (58.2%)
2019	22,471	8,121	5,359 (66.0%)
합계	63,268	19,205	11,343 (59.1%)

라. 민간위탁의 동의 누락에 대한 검토

- 지난 2017년 3월 2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9년 3월 28일 한 차례 개정되면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청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반드시 서울특별시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바 있습니다.⁴⁾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9년에 실시된 학원설립·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상반기 4월~6월, 하반기 9월~11월) 및 2020년에 실시된 동 연수(10월~12월)의 경우 서울시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민간위탁을 통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 2019년에 실시된 연수의 경우 동 조례 개정시의 경과조치로⁵⁾ 인하여 민간위탁 미동의를 납득 가능하다 하겠으나 2020년에 실시된 연수의 경우 고의적인 누락이 의심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제7017호, 2019.3.28.>

②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